

불법소각금지 안내문

불법소각으로 인한 연기 및 유해물질 등의 피해는
고스람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.

폐기물 처리 방법

- 일반 생활 쓰레기 - 종량제 봉투 사용하여 배출
- 재활용품(플라스틱, 스티로폼, 병, 캔 등) - 수거에 용이하게 가지런히 모아 배출

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

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
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.

※폐기물 : 쓰레기, 종이, 폐비닐 등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

위 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는
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

예 천 군
(환경관리과)